

MISSION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를 조성하여
국민의 행복한 삶과 경제 발전에 기여

VISION

국민과 함께하는
최고의 산재예방 서비스 전문기관

핵심가치

안전과 보건

공정과 상식

혁신과 전문성

경영방침

인간중심
책임경영

현장중심
혁신경영

고객중심
가치경영

부산광역시본부 [부서별 주요업무 및 연락처]

주소: 부산광역시 금정구 중앙대로 1763번길 26, 4~6층

부서명	주요업무	대표연락처
경영교육센터	산업안전보건교육	051-520-0558
안전보건체계 지원부	안전보건경영시스템 구축 지원 및 위험성평가(진구, 연제구, 중구, 서구, 영도구, 사하구, 동구, 남구)	051-520-0520
산업보건센터	보건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심사·확인, 국소배기장치 및 휴게시설 재정지원	051-520-0610
산업안전1부	제조업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심사·확인, 위험성평가(사상구, 북구, 강서구)	051-520-0600
산업안전2부	안전인증-검사, 용자·고위험 등 제조·서비스 재정지원 위험성평가(동래구, 금정구, 해운대구, 수영구, 기장군)	051-520-0680
건설안전부	건설업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심사·확인, 추락방지시설 재정지원	051-520-0590
조선업재해 예방센터	조선업 및 항만하역업 재해예방	051-520-0630

교육사업 서비스 (담당: 경영교육센터)



산업안전보건교육이란?

일터에서 일과관련된 사람들이 올바른 작업방법과 안전한 행동을 할 수 있도록 생각과 행동을 바꾸는 교육

대면(화상)교육 안전보건교육포털(www.koshats.or.kr)

신청방법 -크롬(Chrome) 브라우저 사용



공통사항



세부 시간 및 장소는 상기 「안전보건교육 포털」에서 개설 교과 과정별 확인



교육 수수료 후 「안전보건교육포털」 메인화면에서 이수증 출력 가능

1 산재예방요율제 사업주교육 월 2회(4시간)

- (대상) 50인 미만 제조업, 입업, 위생 및 유사 서비스업 사업주
- (내용) 사업주의 산재예방책임, 위험성평가개요, 자체 계획수립 등
- (혜택) 교육수수료 후 1년간 산재보험료 최대 10% 할인 (중복 적용 불가)

2 위험성평가 사업주교육 월 1회(2시간)

- (대상) 신청하는 모든 사업장의 사업주(공장장 등 책임자 포함)
- (내용) 산업안전 정책방향 및 위험성평가 개요 및 방법 등
- (혜택) 공단「위험성평가 인정 사업」과 연계 후 3년간 산재보험료 최대 20% 할인(중복 적용 불가)
- ※ 혜택대상: 50인 미만 제조업, 입업, 위생 및 유사 서비스업 사업주

3 안전보건관리 체계 구축 사업주(관계자) 교육 월 1,2회 화상 및 집체 교육 (2시간)

- (대상) 50인(약) 미만의 모든 사업장의 사업주 및 책임자(공장장, 현장소장 등)
- (내용) 산업안전보건 관련 법령 이해, 안전보건 관리체계 핵심요소(리더십, 근로자참여 방법, 위험요인 파악·대처 등)

4 안전보건관리 담당자 양성교육(자격) 월 1회, 11시간(2일)

- (대상) 상시근로자 20~50인 미만 사업장 중 제조업, 입업, 하수·폐수 및 분뇨처리업, 폐기물 수집·운반·처리 및 원료 재생업, 환경 정화 및 복원업
- ※ 교육전 인터넷 선행학습 5시간 필수(safetiedu.net)

5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평가 교육(자격) 월 1회(3시간)

- (대상)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자(안전보건규칙 제619조의2)
- (내용) 3시간, 이론·실습 혼합형 교육

인터넷 교육 인터넷교육센터(www.safetiedu.net)

교육신청 -크롬(Chrome) 브라우저 사용



공통사항



교육신청 후 나의강의실에서 교육수강, 진도율 100% 이수 시 교육수수료증 출력가능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시간으로 인정(단, 관리감독자 등 교육시간은 전체시간의 50%만 인정)

사업주

1 자기규율 예방체계 확산활동 지원교육 (7개 과정, 각 과정별 2시간)

- 법령(I), 안전리더십(II), 안전보건관리체계(III), 위험성평가(IV), 제조업(V), 건설업(VI), 기타산업(VII)



근로자

1 지역특화 사망사고 예방교육(6개 과정, 각 과정별 2~4시간)

- 공공기관 근로자의 산업안전보건(4개 과정, 각 3H), 항만하역업 기초교육(2H), 건설 화재감시자교육(4H)

2 산재취약계층 교육과정(4개 과정, 각 과정별 2시간)

- 법령·의무(I), 보호구 활용(II), 추락·끼임(III), 충돌·질식(IV)

3 기타교육과정

- (대상) 특수형태근로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양성), 필수업무 종사자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교육	특수형태근로종사자 35개 교육과정 (건설장비 운전자 등 9대 직종)
안전보건관리 담당자(양성)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양성 선행 교육(5H)
필수업무 종사자 교육	필수업무종사자 및 지자체별 조례에서 지정하는 대상 교육 (1 환경미화원, 2 배달기사, 3 돌봄 종사자, 4 요양보호사, 5 보건·의료종사자)

산업재해예방 기술지도 연계 현장교육(강평)

[관련근거: 안전보건교육규정 제9조]

공단의 산업재해예방 지원활동 중 위험요인 및 안전한 작업방법 등에 대해 근로자에게 실시하는 새로운 현장 맞춤형 교육(강평)

공단 산업재해예방 지원 활동 중 사업장 요청 및 직원 판단으로 근로자 대상 교육 실시

근로자 교육 이수할 경우 해당 분기의 정기 안전보건교육 시간 1시간으로 산정 가능

※ 공단에서 교육 후 배포한「현장교육(강평) 결과서」내용을 근거로 사업장 자체 안전보건교육일지 작성 후 공단 결과서와 함께 보존

재정지원 서비스



☛ 지원절차안내



신청방법: 온라인신청(clean.kosha.or.kr), 불가피한 경우 인편 등 신청 가능

고위험개선사업 산업안전2부 연락처: 051-520-0681

- 1 (지원대상)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 등
- 2 (지원설비) 끼임·추락·화재폭발 등 사고사망 예방품목

- 지게차-건설기계충돌예방설비, 화재-폭발예방설비, 고소작업대
- 원료송급및취출자동화설비, 프레스-전단기안전장치, 프레스-사출성형기 금형교환장치, 추락방지시설, 건설기계(굴착기)안전장치
- 식품가공용기계 교체, (비)금속품 운반용 안전적재함, 화물자동차 충돌 재해예방설비, 고위험작업 대체설비(자동화설비)

- 3 (지원한도) 사업장 당 최대 3,000만원
- 공단 판단금액의 70% 또는 정액(일부품목) 지원

산업재해예방시설 응자지원 산업안전2부 연락처: 051-520-0681

- 1 (지원대상) 근로자를 고용한 산재보험 가입 사업장(300인 미만 우선지원)
- 2 (지원설비) 유해 또는 위험기계·기구 신규 설치 및 교체

- CNC머시닝센터, 프레스, 크레인, 사출성형기, 산업용 로봇, 컨베이어, 지게차, 승강기, 혼합기, 분쇄·파쇄기 등

- 3 (지원조건 및 절차) 사업장 당 최대 10억원 한도, 소요비용 전액지원(고정금리 1.5%, 3년거치 7년 분할상환)

스마트 안전장비 보급확산 산업안전2부 연락처: 051-520-0681

- 1 (지원대상) 산재보험 가입한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
- 2 (지원품목) 인공지능(AI) 기반 인체감지 시스템 등 19개 품목
- 3 (지원한도) 사업장 당 최대 3,000만원(공단 판단금액의 80% 지원)

추락방지시설 건설안전부 연락처: 051-520-0595

- 1 (지원대상) 공사금액 50억원 미만 건설현장 추락방지용 안전시설 설치 사업주
- 2 (지원품목) 시스템비계, 안전방망, 사다리형 작업발판
- 3 (지원한도) 건설현장 당 최대 3,000만원(사업주 당 연간 최대 3개소)
- 공사금액 3억원 미만 현장 최대 9개소, 3억원~20억원 미만 현장은 최대 6개소 지원

국소배기장치 산업보건센터 연락처: 051-520-0614

- 1 (지원대상) 상시근로자 수 50인 미만 판단금액의 70%
상시근로자 수 50인 이상 판단금액의 50%
- 2 (지원한도) 동일 사업주 당 최대 5천
- 3 (신청방법) 오프라인으로 신청
만원(단, 조리훈은 최대 2천 5백만원) (우편발송 또는 일선기관 방문)

상세내용



위험성평가 재해예방활동인정 서비스



(담당: 산업안전1부)

☛ 위험성평가란?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해당 유해-위험요인에 의한 부상 또는 질병의 발생 가능성과 중대성을 추정·결정하고 감소대책을 수립·실행하는 일련의 과정

※ 관계법령: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 시행규칙 제37조

위험성평가 재해예방활동 적용 대상

- 상시근로자 50명 미만인 제조업, 임업, 위생 및 유사서비스업(하수도 포함) 사업장

위험성평가 재해예방활동 인정이란

-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재해예방활동 신청서를 제출한 사업장에 대해 공단 심사원이 현장 방문하여 평가항목 및 기준에 따라 객관적으로 심사한 후 일정기준 이상의 사업장에 대하여 인정서를 발급

위험성평가 컨설팅 및 인정절차



*불인정시 결정일로부터 1개월 경과 후 재신청 가능

- 1 (컨설팅) 사업주가 스스로 위험성평가를 할 수 있도록 전체 공정(작업) 중 일부 또는 해당 사업장의 위험포인트를 중점으로 공단에서 컨설팅을 지원
》 위험성평가 지원시스템(http://kras.kosha.or.kr)에서 신청
- 2 (교육) 위험성평가에 필요한 사업주 및 담당자 교육
》 (사업주교육) 안전보건교육포털(http://www.koshats.or.kr)에서 위험성평가 사업주교육 신청
》 (담당자 교육) 위험성평가 지원시스템(http://kras.kosha.or.kr)을 통해 민간교육기관의 교육 신청
- 3 (인정신청) 위험성평가 인정신청서를 제출하면 재해예방활동 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같음
※ 단 23년 설립사업장은 별도 재해예방 활동 신청서 접수 필요
》 지원시스템(http://kras.kosha.or.kr)에서 신청

위험성평가 재해예방활동 인정 시 혜택

- 1 산재보험료율 최대 20% 인하
- 2 인정유효기간(3년) 동안 정부의 안전·보건 감독 유예
- 3 공단 재정지원 지원 서비스 (고위험-용자) 추가 지원
- 4 기술보증기금 보증실행 시 최초 3년간 보증비용 100%적용, 보증요율 0.2%감면

2023 산업재해예방 주요 사업(서비스) 안내

안전보건공단 부산광역시본부

